

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 안내 사항 소상공인 공지

1. 3자계약체결

2. 계약서제출

- A. 계약서는 소상공인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- B. 소상공인 현장(사업장)에 방문하여 기술설치 가능 여부 확인 후 대면 계약 필수
- C. 자부담금 안내 및 유/무상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 안내 필수
- D. 소상공인이 법인일 경우, 인감 날인
- E. 소상공인이 개인사업자 일 경우, 서명과 인감 모두 가능
- F. 방식: PDF 파일 업로드
- G. 각 상점-도입기술 당 계약서 1장(소상공인 1부, 기술기업 1부) 작성 필수: 상품 2개인 경우 2장 작성(소상공인 2부, 기술기업 2부)
- H. 소상공인 도장/서명(법인~인감 날인, 개인~ 인감 또는 서명) 및 기술직업 직인 필수
- I. 작성일자 기입 필수

3. 계약승인

4. 협약체결

- A. 계약승인 상점을 취합하여, 공단에서 협약체결 리스트 전달(공단과 기술기업 협약 체결)
- B. 계약취소 상점 발생 시, 협약체결 리스트에서 기술기업이 공단으로 제외 요청
- C. 협약요청: 협약서(날인 본)/기술공급기업 지급보증보험/소상공인 지급 보증보험 → 3가지 서류 취합하여 제출 (PDF 파일 업로드)
- D. 협약승인: 3가지 서류 검토 후 승인
- E. 계약취소 상점 발생 시, 협약체결 리스트에서 기술기업이 공단으로 제외 요청

5. 자부담금납부

- A. 기술 설치 완료일 전에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입금 필수.
- B. 자부담금 미납부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.
- C. 취약계층(1인점포, 간이과세자, 장애인기업) 소상공인 자부담율 20%
- D. 소상공인 자부담율 30%
- E. 계좌이체 시
 - ✓ 입금 후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(제휴카드 결제인 경우, 제출 불 필요)
 - ✓ 무통장 입금 및 간편결제 (** 페이) 불가
 - ✓ 이체 금액=자부담금 비용 + 부가가치세
 - ✓ 이체확인증 필수 요소: 입금일자, 보내는 분(예금주명), 받는 분, 출금계좌번호, 입금계좌번호, 이체금액이 드러나야 함(마스킹 불가)
 - ✓ 이체금액이 계약서상 자부담액과 일치해야 함.
 - ✓ 면세사업자인 경우 자부담금 비용만 송금
 - ✓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인 경우 자부담금 비용과 부가세 금액 모두 송금 필수
- F. 제휴카드결제 시
 - ✓ 별도제출 불 필요 (소상공인 세금계산서 불필요, 카드 결제 시 국세청에 자동신고)
 - ✓ 제휴카드 발급 문의처
 - 042-388-1092 팀장 김 동하
 - 042-388-1071 대리 최 진아
 - 042-388-1070 대리 길 정이
 - ✓ 신청방법
 - ARS 간편신청 1599-1072> 1번 전당 상담원 유선 통화
 - 당일신청 시 익일 발급
 - 카드발급 시 고객 앞 배송 안내 SMS 발송
 - 카드거절 시 2~3일 후 거절 안내 SMS 발송
 - 자부담금 300만원 4~12개월 무이자 할부

6. (소상공인) 지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

- A. 국비에 대한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제출 필수 (자부담금, 부가세 금액 제외한 국비지원 금액)
- B.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발급 방법
 - ✓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방문→상품→지급보증보험→상품안내→협약지원금/의무상환금
 - ✓ 문의처: 1670-7000(서울보증보험)
 - ✓ 계약승인 후 공단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발급 안내 문자 발송 예정(계약승인 상점만 발급 가능)
 - ✓ 보험계약자: 소상공인 상점 명, 대표자 본인 성함 모두표기
 - ✓ 피보험자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- ✓ 보험가입금액: (일반형) 5백만원
 - ✓ 지급보증 계약기간: 계약일자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
- ✓ 보증내용: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
- ✓ 주계약명: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

7. 협약서 제출

8. 지급보증보험 제출

9. 협약승인

10. 기술설치

- A. 각 상점-도입기술 단위로 홈페이지내 검수확인서 출력 가능
- B. 방식: 검수확인서 서명 날인 본 PDF 파일 업로드
- C. 검수확인서에 대한 도장/서명 날인
 - ✓ 각 상점-도입기술 당 계약서 1장(소상공인 1부, 기술기업 1부) 작성 필수: 상품 2개인 경우 2장 작성(소상공인 2부, 기술기업 2부)
 - ✓ 작성일자 기입 필수
 - ✓ 대표자 도장/서명 날인 필수
 - ✓ 기술 명, 수량, 금액 등에 대한 임의 수정 불가
- D. 제품설치시 제품의 뒷면이나 바닥면에 부착해야 하는 스티커는 총 2종류
 - ✓ 스티커 #1: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스티커로 "본 기술은 지원받아 제작"의 내용/㈜넥소에서 부착 예정
 - 스티커 발송업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 예정
 - ✓ 스티커 #2: ㈜넥소에서 제작하여 부착 예정: A/S관련 전화번호, QR코드, 상호, 시리얼번호 포함
 - ㈜넥소에서 자체 제작하여야 함

11. 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및 대금요청

- A. 각 상점-도입기술 단위로 홈페이지내 완료보고서 작성 가능
- B. 계약서/협약서/검수확인서: 기 제출 자료 사본 첨부
- C. 자부담금입금: 해당 소상공인의 이체확인증 첨부(제휴카드 결제 점포일 경우 "카드결제 매장"으로 기입)
- D. 작성일자 및 기술기업 직인 날인 필수
- E. 방식:PDF 파일 업로드
- F. 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관련 기술기업 의무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 필수 사항)
 - ✓ 계약서 날인을 위한 1차 방문 시: 매장사진(전면 간판, 상호 포함), 도입 전 사진 촬영
 - ✓ 설치를 위한 2차 방문 시: 설치 완료 후, 도입 후 사진, 스티커 2종 부착(기술상품 뒤면 또는 바닥면에 부착) 사진 촬영, 설치 후 정상 작동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(스티커 2종 모두 부착된 상태 포함하여 동영상 촬영 필수)
- G. 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관련 소상공인 의무
 - ✓ 상기 1차,2차 방문 시 ㈜넥소 담당자의 사진 촬영 협조

12. 대금지급

- A. 대금 요청: 보급 완료한 기술에 대해 완료보고서 작성 후 대금 요청
 - ✓ 대금 요청 공문
 - ✓ 검수 확인서
 - ✓ 완료 보고서
 - ✓ 세금 계산서
 - ✓ 이체확인증(필요 시)_제휴카드 결제인 경우 미 제출
 - ✓ 방식: PDF 파일 업로드
- B. 대금승인 건에 한하여 기술보급비 일체 지급

13. 회계정산

14. 기술의무사용 2년

- A. 기술보급 이후 의무사용기한 2년 준수
- B. 의무사용기간 이내에 폐업,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"양도양수" 가능 → 별도 신청 서식 작성 및 제출 필수
- C. 그 외 무단 폐기 및 폐업, 양도양수 미진행일 경우 환수 처리

15. 사후관리(유지보수)

- A. 무상유지보수 2년, 유상유지보수 1년
- B. 무상유지보수일지라도 소상공인 고의에 의한 파손일 경우 유상 처리
- C. 무상 유지보수 구분: 소비자 과실, 파손을 제외한 모든 경우
- D. 유상 유지보수 구분: 소비자 과실, 파손
- E. 유지보수 관련 스티커 총 2가지 종류 부착 의무 준수
 - ✓ 스티커 #1: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스티커로 "본 기술은 지원받아 제작"의 내용/㈜넥소에서 부착 예정
 - ✓ 스티커 #2: ㈜넥소에서 제작하여 부착 예정: A/S관련 전화번호, QR코드, 상호, 시리얼번호 포함

16. 현장점검

- A. **현장 점검이 불가할 경우, 정상설치 동영상 제출 필요**
- B. 추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예정인 현장점검에 협조 필수
- C. 현장점검의 목적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사업에 대한 부당한 활용 방지
- D.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에 대한 부당한 활용 사례 및 제재 조치
 - ✓ 대리서명, 대리신청(주민등록번호, 사업자 개인정보 편취), 재판매,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에 따른 환수의 경우 단순 환수에서 그치지 않고
 - ✓ 권익위를 통한 제재부가금 부과
 - ✓ 부정행위에 따른 허위 청구일 경우 보조금법 상 제재부가금 5배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부정행위 방지에 협조
 - 이미 기존에 판매했다가 환불된 제품을 다시 재판매한 사례로 걸리는 경우
 - 자부담금 대납, 기타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스마트상점 기술 선택을 종용하는 경우
 - 제재조치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사업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 심할 경우 중기부 및 중기부 산하 사업에 참여 제한 받을 수 있음.

-끝-